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과 학생회칙

2014년 11월 9일 제정

2017년 9월 23일 1차 개정

2019년 3월 8일 2차 개정

2019년 12월 19일 3차 개정

2025년 6월 24일 4차 개정

2026년 3월 6일 5차 개정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과 학생회

목차

전문

제1장 총칙

제1절 물리학과 학생회

제2절 회원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제2절 학생총회

제3절 학생총투표

제4절 운영위원회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학생회장단

제2절 비상대책위원회

제3절 집행위원회

제4절 새내기 학생회 대표단

제5절 새내기 학생회

제4장 자치단체

제5장 재정

제6장 선거

제7장 회칙 개정

<부칙>

전문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과 학생회(이하 본회)는 물리학과 학생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과에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 조직이다. 이에 따라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과 학부생 모두를 회원으로 하며 회원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5.06.24.>

제1장 총칙

제1절 물리학과 학생회

제1조 (명칭) 본회는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학생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해 물리학과 학생들의 진보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3조 (설치) 본회는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과(이하 물리학과)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물리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모든 학부생으로 한다. <개정 19.12.19.>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 중 재학생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학생회칙(이하 회칙)을 준수하고, 운영에 필요한 학생회비(이하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본회의 회원은 학문의 자유와 자치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6) 본회의 회원은 정당한 학생 활동에 대해 본회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았을 때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개정 19.12.19.>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제6조 (집행) 본회는 물리학과 학생총회(이하 학생총회), 물리학과 학생총투표(이하 학생

총투표), 물리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 사항을 본회 집행위원(이하 집행위원)이 집행한다. <개정 19.03.08.>

제7조 (협의)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 총학생회 확대운영위원회, 이과대학 확대운영위원회, 이과대학 운영위원회와의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해당기구와 협의,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7.09.23.>

제8조 (의결 및 운영) 의결 및 운영 기구는 학생총회 - 학생총투표 - 운영위원회의 순서로 그 권한을 가진다. <개정 19.03.08.>

제2절 학생총회

제9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10조 (권한)

- (1) 본회의 존립 및 회원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2) 회칙 및 활동에 필요한 각종 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 (3) 물리학과 학생회장단(이하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을 심의 및 결정한다.
- (4) 본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토론 및 의결한다. <개정 19.12.19.>

제11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며, 모든 회원은 학생총회에 출석할 의무를 가진다. <개정 19.12.19.>

제12조 (의장)

- (1) 학생총회의 의장은 물리학과 학생회장(이하 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학생회장이 부재할 경우에는 물리학과 부학생회장(이하 부학생회장)이 맡는다.
- (2)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모두 의장의 역할을 맡지 못할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의장을 맡는다. <신설 25.06.24.>
- (3) 권한대행마저 의장의 역할을 맡지 못할 경우에는 제24조 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의장 직무 대행 순서에 따라 의장을 맡는다. <신설 25.06.24.>
- (4) 위 조항에 해당하는 인원이 모두 의장의 역할을 맡지 못할 경우에는 학생총회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 회원 중 1인을 의장으로 선출한다. <개정 25.06.24.>

제13조 (소집)

- (1) 학생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2) 학생총회는 대면으로 개최한다. <신설 25.06.24.>
- (3) 정기회의는 매 학기 시작 1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4)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20인 이상 또는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 또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을 공고한다.

(5) 학생총회의 소집과 상정 안건은 회의 7일 전에 의장이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 전에 소집과 상정 안건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19.12.19.>

제14조 (의결)

(1) 학생총회는 모든 안건에 대해 회원 중 2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03.08.>

(2)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5.06.24.>

1. 학생회장단 탄핵의 안
2. 새내기 학생회 대표단 선출의 안
3. 새내기 학생회 대표단 임기 연장의 안
4. 회칙 개정의 안
5. 비상대책위원회 인준의 안

제3절 학생총투표 <신설 19.03.08.>

제15조 (지위) 본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투표이다.

제16조 (권한)

(1)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2) 본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7조 (투표권) 본회의 모든 회원은 학생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가진다.

제18조 (실시)

(1) 학생총투표는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본회의 회원 20인 이상 또는 학생회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생회장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생총투표의 실시 일자 및 안건을 공고해야 하며, 해당 공고는 투표 7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5.06.24.>

(2) 상정 요구된 건은 수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회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제19조 (의결) 본회의 회원 과반수의 참여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투표관리위원회)

(1) 학생총투표 실시가 결정되면 운영위원회는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의무를 지닌다.

(2) 투표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 중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투표관리위원장은 반드시 학생회장단 중 1인으로 한다.

(3) 학생총투표에 대한 관리는 투표관리위원회가 책임진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21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상설 의결 기구이다. <개정 19.03.08.>

제22조 (권한) 본회의 회원 전체의 이해와 요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활동 전반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17.09.23.>

제23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총무, 새내기 학생회 대표, 새내기 학생회 부대표,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5.06.24.>

제24조 (의장)

(1)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학생회장이 부재할 경우에는 부학생회장이 맡는다.

(2)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의장의 역할을 맡지 못할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선출된 권한대행이 의장을 맡는다. <개정 25.06.24.>

(3) 제24조 제2항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임해야 할 경우에는 권한대행 선출시까지 운영 위원 중 1인이 임시의장으로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의 직무 대행 순서는 매해 운영위원회의 구성 후, 처음 개회하는 임시회의에서 정한다. <신설 25.06.24.>

제25조 (회의 및 소집)

(1) 운영위원회는 상설 의결 기구로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2) 정기회의의 일정은 매해 운영위원회의 구성 후, 처음 개회하는 임시회의에서 정한다. <신설 25.06.24.>

(3) 정기회의 소집은 회의 1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5.06.24.>

(4) 임시회의는 학생회장단 또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소집은 회의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5.06.24.>

(5) 단, 학생회장 또는 새내기 학생회 대표의 권한대행 선출 안건에 한하여, 임시회의는 회의 시작 1시간 전에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5.06.24.>

(6) 매 학기 최소 한번의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는 새내기 학생회와의 대면 연석회의로 진행해야 한다. 단, 이를 학생총회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5.06.24.>

제26조 (의결)

(1)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안건의 내용에 관계없이 충분한 만장일치를 지향하되 논의를 거친 후 출석한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03.08.>

(2) 단, 새내기 학생회 대표 권한대행 선출 안건에 한하여 출석한 운영위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5.06.24.>

제27조 (참관)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운영위원회를 참관할 수 있다. 단, 발언은 의장의 동의 하에 가능하며,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개정 25.06.24.>

제28조 (안건 상정의 자유) 운영위원회의 안건은 본회의 회원 누구나 상정할 수 있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설 17.09.23.>

제29조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한 내에 회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개정 25.06.24.>

1. 회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2. 해당 월의 말일 이내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학생회장단

제30조 (지위)

(1)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5.06.24.>

(2)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 궐위된 경우 그 직을 승계한다. 궐위 이외의 사유로 학생회장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학생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7.09.23.>

제31조 (권한 및 책임) 학생회장은 다음의 권한 및 책임을 갖는다.

1. 내외적인 업무에 있어서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 및 실시할 수 있다.

2. 학생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본회의 활동 및 회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심의하는 모든 회의에 본회의 대표자로서 출석한다.

4.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할 책임을 진다.

5. 본회의 집행위원의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6. 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으며 학생총회에서 개정된 회칙을 7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7. 기타 본회의 활동에 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5.06.24.>

제32조 (구성) 학생회장단은 선거로 당선된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학생회장은 1인, 부학생회장은 1인 또는 2인으로 둔다. <개정 25.06.24.>

제33조 (임기)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해당 당선 공고일의 다음 날 0시부터 시작하여, 차기 학생회장단의 당선 공고일까지로 한다. 단, 본회의 선거가 무산된 경우에는 그 임기를 차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설립 공고일까지로 한다. <개정 25.06.24.>

제34조 (권한대행)

(1)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모두 공석이거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위원 중 1인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한다.

(2) 권한대행은 최소 3개월 이상의 운영위원 경험을 갖춘 자로 한다. <신설 25.06.24.>

(3) 권한대행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 및 의무를 갖는다. <신설 25.06.24.>

(4) 권한대행은 학생회장단 혹은 비상대책위원장단의 선출일까지 학생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개정 19.12.19.>

제35조 (학생회장단의 탄핵)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에 대하여 본회의 회원 중 1인 이상이 정해진 절차에 의해 탄핵 소추안을 상정할 수 있으며, 학생총회의 의결 결과에 의해 탄핵 가부가 결정된다. <개정 19.12.19.>

제36조 (탄핵 소추안 상정 절차)

(1) 학생총회에 탄핵 소추안을 상정하려면, 본회의 회원 40인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탄핵 소추안이 상정될 경우, 학생회장단을 제외하고 제24조에서 정한 의장 직무 대행 순서에 따라 의장 직무 대행이 7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5.06.24.>

(3) 탄핵 소추안이 상정되면 탄핵 소추안이 가부 결정이 날 때까지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은 그 지위와 권한을 정지 당한다. <개정 19.03.08.>

제37조 (탄핵 시행 이후)

(1) 탄핵 소추안이 학생총회에 의해 가결된 경우, 해당 회차의 학생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다. <개정 19.03.08.>

(2) 선출된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통해 부비상대책위원장 및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하 비상대책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신설 25.06.24.>

제2절 비상대책위원회 <신설 17.09.23.>

제38조 (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의 권위기간동안 본회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

제39조 (권한) 비상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이하 비상대책위원장단)은 집행위원회와 학생회장단에 준하는 업무 권한과 책임 및 의무를 갖는다. <개정 25.06.24.>

제40조 (의무)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할 의무를 진다.

제41조 (구성)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장단과 비상대책위원으로 구성된다.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장 1인, 부비상대책위원장 1인으로 둔다. <개정 25.06.24.>

제42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1) 본회의 선거가 무산된 경우 또는 학생회장단의 탄핵을 제외한 기타 사유로 학생회장단이 부재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5.06.24.>

(2) 설립위원회는 운영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이하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 1인을 호선으로 선출한다.

(4)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회 구성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신설 25.06.24.>

1. 설립위원회 구성 사유

2. 설립위원회 구성원

(5) 설립위원회 회의는 설립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최한다. <신설 25.06.24.>

(6) 설립위원회는 설립 후 7일 이내에 설립위원 만장일치로 비상대책위원장단과 비상대책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개정 25.06.24.>

(7) 비상대책위원장단 후보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운영위원 경험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19.03.08.>

(8) 설립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단 및 비상대책위원 선출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신설 25.06.24.>

1.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절차

2. 비상대책위원장단 선출 과정 (후보자 정보, 투표 방식 및 투표 결과)

3. 비상대책위원장단 선출 결과

4. 비상대책위원 선출 과정 (투표 방식 및 투표 결과)

5. 비상대책위원회 선출 결과

6. 설립위원회 해소 공지

제43조 (인준)

(1) 비상대책위원회는 제14조 제2항에 따라 학생총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개정 19.03.08.>

(2) 단, 2학기 개강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43조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한다. <신설 19.03.08.>

제44조 (임기) 비상대책위원장단 및 비상대책위원의 임기는 해당 선출 공고일의 다음 날 0시부터 시작하여, 차기 학생회장단의 당선 공고일까지로 한다. 단, 본회의 선거가 무산된 경우에는 그 임기를 설립위원회의 구성 공고일까지로 한다. <개정 25.06.24.>

제3절 집행위원회

제45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 기구이다.

제46조 (업무 및 권한)

(1) 총무와 집행위원은 학생회장의 통괄 하에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사업 집행을 총괄한다. <개정 25.06.24.>

(2) 총무와 집행위원은 학생총회, 운영위원회에서 본회 관련 사업 집행 업무와 관련해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5.05.24.>

제47조 (의무) 집행위원회는 학생총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할 책임과 학생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48조 (임명 및 구성)

(1) 총무와 집행위원은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2) 집행위원회의 조직은 학생회장이 결정한다.

(3) 집행위원의 임명, 해임 및 사퇴에 관하여 학생회장은 해당 내용을 3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5.06.24.>

제49조 (총무의 지위) 총무는 본회의 재정 전반을 담당한다.

제50조 (총무의 업무) 총무는 회비를 인수하며, 학생회장단과 더불어 회비를 관리한다.

제4절 새내기 학생회 대표단 <신설 17.09.23.>

제51조 (지위)

(1) 새내기 학생회 대표단은 각 학년도의 새내기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신설 25.06.24.>

(2) 새내기 학생회 부대표는 새내기 학생회 대표의 권위 시에 그 직을 승계한다. 권위 이외의 사유로 새내기 학생회 대표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내기 학생회 부대표가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 (업무 및 권한)

(1) 새내기 학생회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5.06.24.>

(2) 학생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새내기 및 새내기 학생회의 의견을 대표한다.

<신설 25.06.24.>

(3) 새내기 학생회 대표단은 새내기 학생회에서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5.06.24.>

제53조 (구성) 새내기 학생회 대표단은 학생총회에서 선출된 새내기 학생회 대표 1인과 새내기 학생회 부대표 1인 또는 2인으로 구성된다. <신설 25.06.24.>

제54조 (새내기 학생회 대표단 선출)

(1) 새내기 학생회 대표단은 각 학년도의 3월과 9월에 개최하는 학생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5.06.24.>

(2) 학생회장단은 새내기 학생회 대표단 선거의 진행을 총괄한다.

(3) 학생회장단은 새내기 학생회 대표단 선출 즉시 해당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신설 25.06.24.>

제55조 (임기)

(1) 3월에 선출된 새내기 학생회 대표단의 임기는, 해당 선출 공고일의 다음 날 0시부터 시작하여, 차기 새내기 학생회 대표단의 선출 공고일까지로 한다. 단, 학생총회에서 새내기 학생회 대표단의 임기 연장 안건이 가결된 경우에는 그 임기를 다음 학년도의 새내기 학생회 대표단 선출 공고일까지로 연장한다. <신설 25.06.24.>

(2) 9월에 선출된 새내기 학생회 대표단의 임기는, 해당 선출 공고일의 다음 날 0시부터 시작하여, 다음 학년도의 새내기 학생회 대표단 선출 공고일까지로 한다.

<신설 25.06.24.>

제56조 (권한대행)

(1) 새내기 학생회 대표단이 모두 공석하거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회의 새내기 중 1인을 선출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해 권한대행으로 인준한다. <신설 25.06.24.>

(2) 권한대행은 최소 1개월 이상의 운영위원 경험을 갖춘 새내기로 한다.

<신설 25.06.24.>

(3) 권한대행은 새내기 학생회 대표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 및 의무를 갖는다.

<신설 25.06.24.>

(4) 권한대행은 다음 학기 또는 다음 학년도 새내기 학생회 대표단의 선출 공고일까지 새내기 학생회 대표의 역할을 대행한다. <신설 25.06.24.>

제5절 새내기 학생회 <신설 25.06.24.>

제57조 (지위)

(1) 새내기 학생회는 본회에 소속되며, 본회의 새내기 대표 기구이다.

(2) 본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있더라도, 새내기 학생회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

제58조 (업무 및 권한)

(1) 새내기 학생회는 새내기 학생회 대표단을 도와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2) 본회의 국제캠퍼스 대상 사업을 집행한다.

제59조 (구성) 새내기 학생회는 본회의 새내기 운영위원회로 구성된다. 본회의 새내기 운영위원회는 새내기 학생회 대표단과 새내기 학생회 집행위원회로 둔다.

제60조 (활동 기간) 새내기 학생회의 활동 기간은 구성된 시점부터 해당 학년도 학생회 장단 또는 비상대책위원회장단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장 자치단체 <신설 26.03.06.>

제61조 (정의) 물리학과 자치단체는 물리학과 학생의 학술 또는 취미 활동을 위해 조직된 단체로서 본 회칙 제62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62조 (등록) 물리학과 자치단체의 등록은 상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단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26조에 따라 등록 여부를 의결한다.

1. 5인 이상의 본회 회원을 포함한 회원 명부

2. 자치 회칙

제63조 (지위) 물리학과 자치단체는 본회 회칙의 범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 본회와 독립적인 자치 회칙의 효력을 가진다.

제64조 (운영) 물리학과 자치단체는 매 학기 시작 전 다음을 본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직전 학기 활동보고서

2. 해당 학기 등록 회원 명부

제65조 (지원)

(1) 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요청은 상시 가능하며, 지원 여부 및 그 액수는 지원금 지출

계획서 심의를 거쳐 제2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의결한다.

(2) 재정 지원이 통과된 자치단체는 본회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한 분기 내에 본회에 지출보고서를 지출할 의무가 있다.

제66조 (등록 취소) 물리학과 자치단체가 본 회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제26조에 따라 등록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67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물리학과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제68조 (회비)

(1)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학생총회에서 의결한다. 단, 동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2) 회비는 본회의 회원이 학부과정에 입학한 이후,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회비는 학생회장단과 총무가 관리한다.

(4) 회비의 인출은 학생회장단과 총무 모두의 동의에 의해 집행된다.

(5) 회비는 운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7.09.23.>

제69조 (결산)

(1) 집행위원회는 매 학기마다 학생총회에서 결산을 보고하여 심사를 받는다. 단, 4분기 결산은 차기 학생총회에서 결산을 보고하여 심사를 받는다. 정기 결산일은 아래와 같이 한다. 학생회장은 결산 보고 내용을 7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개정 25.06.24.>

1분기 결산: 1학기 개강일

2분기 결산: 1학기 종강일 다음 날

3분기 결산: 2학기 개강일

4분기 결산: 해당 학년도 학생회장단 임기 종료일

(2) 두 분기 안에 심사를 받지 못하면 보고로 끝난다.

(3) 심사를 받지 못한 채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보고 이후 3일간 이의제기 기간을 갖는다.

(4) 이의제기 기간이 끝나면 결산 보고를 심사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03.08.>

(5) 제65조에 따라 본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자치단체는 해당 분기의 지출보고서를 집행위원회의 결산안과 함께 심사 받는다. <개정 26.03.06.>

제70조 (이월) 학생회장단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회비 잉여금은 다음 학생회에 전액 이월된다.

제6장 선거

제71조 (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한다.

제72조 (선거권, 피선거권)

(1) 본회의 회원 중, 해당 학기에 등록을 마치고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유권자 등록을 한 자는 선거권을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이면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고 선거시행세칙에 정한 조건을 갖춘 자는 피선거권을 갖는다. <개정 17.09.23.>

1. 해당 학기의 등록을 마친 자

2. 선거가 1회 이상 무산되었고, 무산된 선거 때 재학 중이었던 자

제73조 (선거시기) 학생회장단의 선거는 2학기 말로 한다. 단, 후보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학생회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운영된다.

제74조 (기타) 기타 선거에 대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의한다.

제7장 회칙 개정

제75조 (발의) 회칙 개정은 본회의 회원 20인 이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학생회장의 요구로 발의한다. <개정 19.03.08.>

제76조 (심의) 회칙 개정안은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되어야 한다.

<신설 17.09.23.>

제77조 (공고)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할 날로부터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5.06.24.>

1. 회칙 개정안의 제안 이유
2. 회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3. 신·구 조문 대비표
4.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78조 (의결)

(1) 회칙 개정안은 제14조 제5항에 따라 학생총회에서 의결한다.

(2) 회칙 개정안이 학생총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회칙 개정안을 수정하여 다시 발의할 수 있다. <신설 25.06.24.>

제79조 (회칙의 정리) 회칙에서 조항 · 자구 · 숫자 또는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운

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수정할 수 있다. 단 회칙의 본래 의도를 훼손하거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개정 25.06.24.>

제80조 (회칙의 공포) 학생총회를 통해 가결된 회칙 개정안은 7일 이내에 학생회장이 공포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5.06.24.>

제81조 (세칙의 정의)

(1) 본회의 세칙은 회칙에 규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시행 사항들을 위임하여 자세하게 명시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2) 본회의 세칙은 회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다.

<신설 17.09.23.>

제82조 (세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세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결한다. <신설 17.09.23.>

1.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한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2. 학생총회에서 본회의 회원 중 20인 이상의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부칙>

제1조 (시행) 회칙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생총회의 비대면 개최)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에는 학생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5.06.24.>

제3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본회의 모든 의결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회의를 소집할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확히 공고해야 한다. <신설 25.06.24.>